

## 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조직 운영 및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직급 상향한 정원을 6명(5급 2명, 6급 2명, 7급 1명, 8급 1명)으로 하려는 것임

## 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     략

나. 예산조치 :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    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    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 
없음

##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별표 2 중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“7”을 “8”로 하고, 행정주사보 또는  
시설주사보 “4”를 “3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) 이 규칙 시행으로  
조정되는 별표 2의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1명은 2023년 6월 30일까지  
존속하며, 2023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행  
정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으로 본다.

## 신 · 구 정원 대비표

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[별표 2]
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정원표(제10조제1항 단서 관련)

| 직     | 급  | 별     | 현        | 행 | 개정안      | 증 감 |
|-------|----|-------|----------|---|----------|-----|
|       | .  |       | .        |   | .        |     |
|       | .  |       | .        |   | .        |     |
| 행정주사  | 또는 | 시설주사  | <u>7</u> |   | <u>8</u> | +1  |
|       | .  |       | .        |   | .        |     |
|       | .  |       | .        |   | .        |     |
| 행정주사보 | 또는 | 시설주사보 | <u>4</u> |   | <u>3</u> | -1  |
|       | .  |       | .        |   | .        |     |
|       | .  |       | .        |   | .        |     |